

『현대북한연구』 발행규정

	제정	1998.11.01.
1차	개정	2003.08.29.
2차	개정	2005.03.02.
3차	개정	2007.06.02.
4차	개정	2009.01.12.
5차	개정	2012.03.01.
6차	개정	2012.12.07.
7차	개정	2016.03.01.
8차	개정	2018.02.07.

제1장 총칙

제1조(발간)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는 『현대북한연구』라는 학술지를 발간한다.

제2조(목적) 『현대북한연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① 북한 및 통일문제를 다루는 전문 학술지로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을 추구한다.
- ②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역사, 대외관계와 남북한관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심도 있는 학문적 연구를 촉진하여 북한학의 심화를 추구한다.
- ③ 북한 및 통일문제를 연구하는 전문학자들의 연구 활동을 촉진하여 북한대학원대학교의 연구 및 강의를 위한 학술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북한학 교육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3조(성격) 『현대북한연구』는 북한 및 통일문제를 전문성을 기반으로 심도 있게 학술적으로 연구한 논문만을 게재하는 전문학술지이다. 북한 및 통일문제와 관련된 시사적인 분석, 정책제안 및 사안 예측·전망 등 정책지향적인 연구 또는 저널리즘적인 연구논문은 『현대북한연구』의 성격에 부합되지 아니한다.

제4조(발간횟수 및 일자) 『현대북한연구』는 연 3회,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에 발간한다.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의해 추가로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현대북한연구』의 발행을 위해 편집위원회를 둔다.

제6조(편집위원회 구성 및 임기) 편집위원회는 편집인, 편집주간,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편집주간은 편집위원의 호선을 통해 선출한다. 편집주간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정) 편집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 및 기준으로 선정한다.

- ① 탁월한 연구실적 및 경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대학원대학교 및 외부의 북한 및 통일문제 전문가 가운데 편집주간의 추천을 거쳐 편집인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의 전공은 특정한 학문분야에 국한하지 아니하고 복한 및 통일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학자들 중에서 사계의 권위자로 한다.

③ 국제적으로 학술적 업적이 뛰어난 석학을 편집위원으로 초빙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회의 임무) 편집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 잡지의 편집방향의 결정
2. 논문심사 방법, 논문 심사위원의 결정 및 최종 게재여부의 결정
3. 특집호 및 특집의 결정
4. 본 잡지의 대내외적 홍보
5. 기타사항

제9조(편집위원회의 개최)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논문 투고 및 심사

제10조(논문투고) ① 투고 논문은 타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은 논문이어야 한다. 투고자가 이를 위반할 시에는 연구윤리규정 제4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논문의 구성, 분량, 작성 방법은 '원고집필요령'에 따른다.

③ 논문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하여 투고한다.

제11조(심사절차) 편집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논문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제출된 원고의 성격이 우선적으로 제3조에 부합하는지를 편집위원회가 판단하여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부합하지 않는 원고는 편집위원회 명의로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원고에 대한 전공별 심사위원 3인을 위촉한다.

③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의뢰시 편집위원회는 저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④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 후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심사위원의 심사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창의성
2. 논의전개의 명료성
3. 자료의 충실도
4. 접근방법/분석도구의 타당성
5. 이론적 기여

② 심사위원은 심사 항목에 따라 논문을 심사한 후 '가(可)', '부분수정', '전면수정', '불가(不可)'로 평가한다.

③ 판정은 심사위원 3인 단심제로 한다.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위원(3)	판정
가	가	가	가
가	가	부분수정	
가	가	전면수정	
가	가	불가	
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수정
가	부분수정	전면수정	
가	부분수정	불가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전면수정	
부분수정	부분수정	불가	
가	전면수정	전면수정	불가
부분수정	전면수정	전면수정	
전면수정	전면수정	전면수정	
가	전면수정	불가	
부분수정	전면수정	불가	
전면수정	전면수정	불가	
가	불가	불가	
부분수정	불가	불가	
전면수정	불가	불가	
불가	불가	불가	

제13조(판정결과) ① 논문 심사가 완료 된 후 심사위원의 심사평과 함께 판정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통보시 심사위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②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의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심사평에 근거하여 미비점을 보완한 후 최종논문을 제출한다.

③ '수정' 판정을 받은 논문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수정을 요구한다. 이때 투고자가 수정을 거부하거나 기한 내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재 불가로 판정한다.

2. 수정 후 제출된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가 심사위원 3인의 심사평에 기초하여 수정 이행 여부를 검토한 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3.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 정도가 충실하지 않을 경우 게재 불가 판정을 할 수 있다.

④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다시 투고할 수 없다.

제4장 보칙

제14조(이월게재)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 상황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제15조(편집 및 발간)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로 송부하여 인쇄용 원고로 편집한다. 편집된 원고는 저자의 확인을 거쳐 발간한다.

제16조(저작권)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에 귀속된다.

제17조(세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대북한연구』 매호에 '글을 주실 분에게'를 통해 게재한다.

제18조(개정절차) 이 규정의 개정은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 1/3 이상의 발의와 편집위원의 재적위원 2/3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편집위원회 의결 또는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별도의 시행세칙에 의한다.
2. 이 규정은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5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 북한 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현대북한연구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한다.
2. 이 규정은 2007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9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2년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